

의안번호	2209729
의 퇴 인	임이자의원
회 답 일	2025.8.4.
추계번호	25B230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 (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u>공원사무소의 장</u> 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7조 (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이하 “공원사무소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국립공원공단은 「산림보호법」 제2조제9호¹⁾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²⁾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으로,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산불 초동대응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제2조(정의)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및 진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진화조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
원사무소의 장에게 산불진화에 전문적 기술을 갖춘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의 구성·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공원사무소의 장이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
대를 구성·운영할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
불재난특수진화대의 현황 및 임금·수당 지급 체계는 [표 1]과 같음
 - －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경우 2025년 기준 월 309만원의 임금과 시간 외 근로(연
장·야간·휴일) 수당, 출장비, 위험수당(월 4만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7월
부터 지급) 등 산림재난 관련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인건비 등 운영예산 228억 6백만원이 편성됨
 - － 산불예방진화대의 경우 2025년 기준 일 단가 80,240원의 임금과 시간 외 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 출장비 등 산림재난 관련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2025
년 본예산 기준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운영예산
778억 3,600만원이 편성됨

[표 1]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현황 및 임금·수당

구분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2025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로기준법, 산림청 공무원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인원 및 배치 (2025년 기준)	총 9,604명		총 435명
	국가 1,405명 (27개 국유림, 3개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8,199명 (17개 시·도)		국가 435명 (27개 국유림관리소, 5개 지방산림청) (제1회 추경예산 기준, 60명 증원 예정)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연 180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25년 기준 일 80,240원		3,092천원/월 (기본급 2,801천원/월, 복지·명절·급식비)
산림재난 관련 수당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 수당, 출장비 (예산범위 내)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 수당, 출장비, 위험수당 (월 40,000원. 제1회 추경 반영)
2025년 예산 (단위: 백만원)	직 접	23,261	22,806
	보 조	54,575	
	합 계	77,836	

자료: 산림청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원사무소의 장이 구성·운영할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규모, 장비 구축 기타 운영비용 등 추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